

의안
번호

397

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. 10. 19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양 순 임 의원 외 13인

나. 의안번호 : 제397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10. 07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0. 08.

2. 제안이유

-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·내외 관광객과 구민에게 성북구의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(안 제3조)

다. 해설사의 자격, 직무, 선발 등에 관한 내용(안 제4조~제6조)

라. 교육 및 운영에 관한 내용(안 제8조~제9조)

마. 예산지원 및 해설사 배치(안 제10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1. 10. 07. ~ 2021. 10. 13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제정취지 등

-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-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과 해설사 자격 및 직무, 해설사 선발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, 교통비 등을 포함한 해설사의 활동비 지원 근거와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음.
-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 2001년 “한국방문의 해”를 맞이하여 도입된 것으로 2011년 「관광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해설사 선발 및 육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제화 됨.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¹⁾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
- 1)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「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정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, 성북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 관광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